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시설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충전시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충전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안 제 79조의11, 별표 21의3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제4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안 제79조의12, 별표 21의4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7부터 제79조의19까지를 각각 제79조의19부터 제79조의21까지로 하고, 제79조의17 및 제79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7(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충전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8조10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충전시설 운영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정보관리 전산망”이라고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충전시설 운영자는 법 제58조10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충전시설 운영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1의3과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10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정보관리 전산망을 이용

하여 제공·공개하여야 하며, 제공·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1의3과 같다.

제79조의18(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58조제11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21의4와 같다.

제79조의19(중전의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10제1항”을 “법 제58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를 “법 제58조의13제1항제5호”로 한다.

제79조의20(중전의 제79조의18) 중 “영 제52조의6제1항”을 “영 제52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표 2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8서식 중 “제58조의11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을 “제58조의14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8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79조의18”을 “시행규칙 제79조의20”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4제1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제1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1의3]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이용정보 범위 및 제공·공개 정보
범위(제79조의17 관련)

1.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

- 가. 충전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 나. 충전시설 상세 위치(지하의 경우 층수를 포함한다) 및 사진
- 다. 충전시설 도면 및 부대시설 현황
- 라. 충전시설 설치일 및 운영 개시일
- 마. 충전시설 철거·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철거·운영 중단 현황
- 바. 충전기의 종류, 수량, 충전 속도, 충전 용량, 충전 규격 및 충전 방식
- 사. 제조사 및 제조명(모델번호), 주요 제원(諸元)
-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치정보

2. 법 제58조의10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 가. 충전시설 운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 나. 충전시설 운영일, 운영 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한다)
- 다. 충전시설 안전·사고 관련 비상 대응체계 및 연락망에 관한 정보
- 라. 충전기별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상태, 예상 대기 시간
- 마. 충전 요금, 결제 방식 및 요금 표시 방법
- 바. 이용 대상 차량 및 개방 여부
- 사. 고장 여부, 고장 내용 및 예상 복구 기간
-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정보

3. 법 제58조의10제3항에 따른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 가. 충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 나. 충전시설 상세 위치(지하의 경우 층수를 포함한다) 및 사진
- 다. 충전시설 도면 및 부대시설 현황
- 라. 충전기의 종류, 수량, 충전 속도, 충전 용량, 충전 규격 및 충전 방식
- 마. 충전시설 안전·사고 관련 비상 대응체계 및 연락망에 관한 정보

4. 법 제58조의10제3항에 따른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

- 가. 충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 나. 충전시설 운영일, 운영 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한다)
- 다. 충전시설 안전·사고 관련 비상 연락망에 관한 정보
- 라. 충전기별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상태, 대기 인원 및 예상 대기 시간
- 마. 충전 요금, 결제 방식 및 요금 표시 방법
- 바. 이용 대상 차량 및 개방 여부
- 사. 고장 여부, 고장 내용 및 예상 복구 기간
-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 정보

비고

1. 개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비공용 충전시설(가정용 완속충전기, 자체충전용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및 시험·연구용 충전시설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모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설치정보 및 제공해야 하는 이용정보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수소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등록·제공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등록·제공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보관리 전산망과 연계되어있는 경우 충전시설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제공한 것으로 본다.

[별표 21의4]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관리기준(제79조의18 관련)

1. 공통기준

가.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사용자 문의·고장신고 접수 체계
- 2) 유지보수 인력 및 협력업체 연락 체계
- 3) 긴급조치(안전사고, 화재 위험 등) 대응 체계

나.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 사용자가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콜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민원 응대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현장에 연락처 및 이용 안내를 상시 표시
- 2) 24시간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자동응답 포함 가능)
- 3) 고장 신고 접수 시 처리 진행상황 안내

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충전기에 안내문을 부착 혹은 표시하는 방법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충전시설의 가동 및 고장 여부, 충전 요금을 저공해자동차등 사용자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충전시설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충전시설 운영자는 운영 데이터, 사용자 정보 및 결제·통신 기능이 임의 조작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다음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 2) 인증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인증수단의 적용
- 3) 시스템 접속 및 주요 행위에 대한 기록의 생성·보관 및 위·변조 방지
- 4) 통신 구간 및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등 보호조치
- 5)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의 정기적 수행
- 6) 외부 유지보수 인력 및 위탁업체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마.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안전·성능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고 발생 시 충전시설 운영자는 운영사의 최고 경영자 및 충전시설 전담기구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기록하여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충전시설 전담기구는 보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원격 점검 또는 현장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개별기준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1)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전력변환장치, 케이블·커넥터, 결제·통신장치, 안전보호장치 등을 포함한다)의 구조·성능 및 운영 방법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2)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주요 구성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현황 등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3) 충전시설 운영자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기를 불필요하게 교체·철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운영상태 정보가 정보관리 전산망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알림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5)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충전 전력량 및 사용건수 등 운영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를 5년간 기록·관리를 해야 하며, 충전시설 전담기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안전·성능 유지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외관 및 케이블·커넥터 손상 여부
 - (2) 누전·과전류·과열 등 안전보호장치 동작 여부
 - (3) 결제·통신 기능 및 원격 모니터링 정상 여부
 - (4) 표기·안내(이용 방법, 요금, 고장 안내 등) 적정 여부
- 7) 충전시설 운영자는 정기 확인·정비를 실시할 때마다 “확인·정비기록”을 작성하여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8) 충전시설 운영자는 운영중인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기한까지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가) 상반기 점검 결과: 7월 말까지
 - 나) 하반기 점검 결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 9) 정기점검 절차 및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 및 관련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0)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충전 불가, 결제 불가, 통신 장애, 안전장치 이상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수리·복구하여야 한다.
- 11) 충전시설 고장 발생 시 충전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고장·조치기록”을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가) 고장 발생 일시 및 고장 유형
 - 나) 원인(추정 포함) 및 조치 내용(부품 교체 포함), 동일 고장 발생 여부
 - 다) 조치 착수·복구 완료 일시
 - 라) 재발 방지 조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전시설 운영자는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가) 동일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나) 고장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다) 안전사고 우려(누전, 과열, 감전 위험 등)가 발생한 경우
 - 라) 운영 중단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1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는 충전시설 운영자는 회원 가입으로 인한 충전시설 사용자의 충전요금 결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 로밍결제 시스템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1)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결제·통신장치, 부대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구조·성능 및 운영 방법이 관계 법령 및 이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충전시설 운영자는 고장 다발 설비(압축기, 냉각기, 충전기(디스펜서))에 대하여 예비부품 확보, 유지관리 계약 등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통신망·전력망 장애, 수소 수급 불안정 등 외부 요인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신속히 수리·복구 및 정상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충전시설의 이상 징후 또는 고장으로 충전이 중단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설비의 운전을 중지하고, 설비 제작·구축·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점

- 검 및 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수소 품질 저하가 의심되거나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충전시설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외부 전력공급 중단, 통신망 장애, 자연재해 등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충전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관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라) 안전관리자·충전원 부재, 설비 오조작, 유지보수 미비 등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충전시설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교육·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충전시설 전담기구에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4) 고장 발생 시 충전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고장·조치기록”을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 가) 고장 발생 일시 및 고장 유형
 - 나) 원인(추정 포함) 및 조치 내용
 - 다) 복구 완료 일시
 - 라) 재발 방지 조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충전시설의 운영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 충전시설 전담기구는 충전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운영자는 해당 내용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비고

1. 개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비공용 충전시설(가정용 완속충전기, 자체충전용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및 시험·연구용 충전시설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모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를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전송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전송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보관리 전산망과 연계되어있는 경우 충전시설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정보관리 전산망에 전송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u>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u>법 제58조의10제1항</u>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u>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u>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u><신설></u>	<u>제79조의19(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u> ① ----- ----- <u>법 제58조의13제1항</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58조의13제1항제5호</u>----- ----- -----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u>제79조의17(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u> ① 충전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u>법 제58조10제1항</u>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충전시설 운영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u>법 제58조제16항</u>에 따른 전산망(이하 “정보관리 전산망”이라고 한다)

에 입력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항을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하
여야 한다.

② 충전시설 운영자는 법 제58
조10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이
용정보를 충전시설 운영 개시일
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
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충전시
설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
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보관리 전
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10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
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
체적 범위는 별표 21의3과 같
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10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정보와 이용정보를 정보관리 전
산망을 이용하여 제공·공개하
여야 하며, 제공·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별
표 21의3과 같다.

<u>제79조의18</u>(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u>영 제52조의6제1항</u>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u><신 설></u> <u>제79조의19</u> (생략)	<u>제79조의20</u>(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u>영 제52조의8제1항</u>----- ----- -----. <u>제79조의18</u>(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u>법 제58조제11제1항</u>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21의4와 같다. <u>제79조의21</u> (현행 제79조의19와 같음)
---	---